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07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6312호 2000.12.29)으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7 ~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4년간의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나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일부를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까지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5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96조의5 및 부칙(99.12.28) 제5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4
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 입법예고 : 2005. 1. 12. ~ 2005. 1. 21.(10일)
○ 의견 제출 건수 : 4건
○ 의견 반영 여부 : 미반영(지방세법 개정을 요하는 의견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자동차세감면조례표준안(행정자치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5조 내지 제29조)을 제8장(제26조 내지 제30조)로 하고, 제7장 및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종전 승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산시 시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의 특례) 이 조례에 의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2006년 12월 31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이 봉 재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김 항 용
	담 당 자 성명·전화	여 종 일 (행정 218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장 종전 승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산시 시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장 보 칙	제8장 보 칙
제25조 ~ 제29조(생략)	제26조 ~ 제30조(현행 제25조 ~ 제29조와 같음)